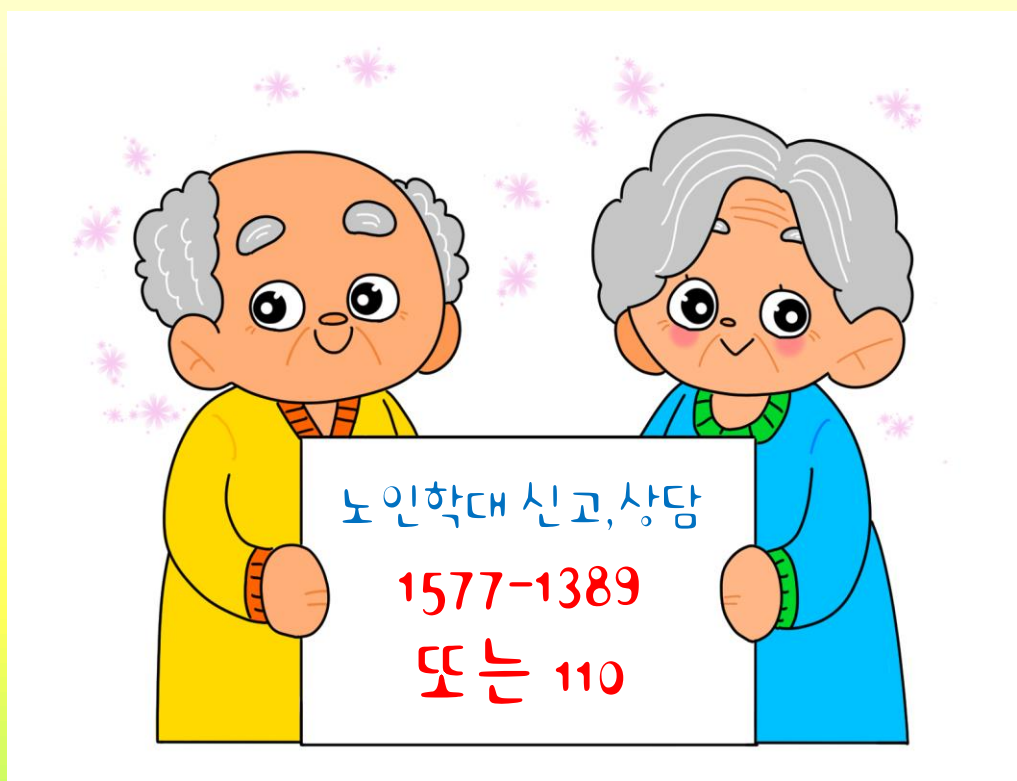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CONTENTS

I. 노인 인권

1. 인권이란?
2. 노인인권의 개념
3. 노인인권의 영역
4. 노인인권 영역과 세부적 권리
5.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인권영역과 세부적 권리

II. 노인 학대

1. 노인 학대의 정의
2. 학대 행위자의 정의
3. 노인 학의 유형
4. 노인 학대의 처벌 기준
5. 노인 학대의 예방
6.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신고의무자가 해야 할 일
7.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르신이 할 일
8. 노인학대 사례와 대응 방법



노인 인권

1. 인권이란?

- 인권(human right)이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 자유, 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 권리
-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이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특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아닌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부여되는 권리 (보편적 권리)

2. 노인인권의 개념

- 다른 연령 집단과 마찬가지로 노인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인권의 주체
- 인권과 노인 인권 개념은 다르지 않고, 그 대상만 노인으로 국한
- 노인 인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없으나 좁은 의미로는 노인이 학대 받지 않을 권리로부터, 넓은 의미로는 연령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권리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개념
-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3. 노인인권의 영역(6개 영역, 16개 실행영역)

<영역1> 건강,돌봄 1. 신체 건강 2. 정신건강 3. 돌봄권	<영역2>기본생활(의식주) 1. 의생활 2. 식생활 3. 주생활	<영역3> 소득 1. 빈곤 예방 및 해소 2. 소득
<영역4> 고용,노동 1. 일자리 또는 고용기회 2. 근로환경 3. 가족 돌봄 노동	<영역5> 사회참여,통합 1. 사회활동 참여 2. 세대 교류 및 소통	<영역6> 존엄,안전 1.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2. 생명권 3. 안전권

4. 노인인권 영역과 세부적 권리

영역	인권항목	세부적 권리
인간존엄권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천부적 자유와 존엄, 생명권,신체의 자유와 안전, 강제노동과 노예 제도의 금지, 고문금지, 법 앞에서의 평등, 차별금지
자유권	신체 자유권	불법 체포 및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불법 강제 노역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불가침, 거주 및 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정신적 자유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개인적 및 집단적 표현의 자유
	경제적 자유권	재산권의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정치적 자유권	정보접근권, 정치활동의 자유, 참정권
사회권	경제권	연금수급권, 기초생활보장권, 노후경제생활 교육받을 권리 등
	노동권	은퇴 준비 교육권, 경제활동 참여권 등
	주거권	주거환경보장권(주택 소유, 주거환경개선, 임대보증금 지원 등)
	건강권	건강증진권,위생 및 영양권,건강급여권,재활서비스 이용권, 요양보호권 등
	평생교육권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등의 교육프로그램 참여권 등
	문화생활권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여가프로그램 참여권 등
	사회참여권	자원봉사활동 참여권, 동아리&클럽활동 참여권, 교통편의서비스 이용권 등
	가족유지권	가족과의 교류, 가족의 부양을 받을 권리 등
	소통권	가족, 이웃, 친구, 비노인층 등 관계망과의 교류권
청구권	법 절차적 권리	청원권, 재판의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의 구조청구권

5.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인권 영역과 세부적 권리

단계	서비스 내용	인권영역과 항목
서비스 이용 이전단계	방문요양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접근권
	이용상담	- 의사표현의 자유권 - 이용 및 이용 상담 절차에 관한 정보 접근권 -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권
	이용결정과 이용계약	- 이용 선택과 이용 여부의 자기결정권 - 이용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 접근 및 공정한 계약을 맺을 권리
이용 초기 단계	이용서비스 안내	-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 규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의할 권리
	이용사정 및 서비스 목표 설정	- 욕구 사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제공의 권리 - 서비스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서비스 계획 수립	- 서비스 선택 수립 과정에서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이용 단계	이용 생활의 기본 처우	- 종사자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 개인적 생활 스타일을 유지하고 영위할 권리 -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 서비스에 대해 알고 선택할 권리 - 학대와 부적절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정서 안정 등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양보호권
	신체활동 지원	-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세심하고 안전한 목욕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적절한 배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안전한 외출 및 이동 서비스를 받을 권리
	일상생활 지원	- 개인적 선호에 따른 의복 착용의 권리 -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질 높은 영양 및 급식 서비스를 받을 권리

단계	서비스 내용	인권영역과 항목
이용단계	개인활동 지원	- 안정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유지권 - 지역사회 여가문화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권리 -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정서 지원	-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통의 권리 - 자유로운 정보통신생활의 권리 - 고충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종결 단계	종결 상담 및 추후 서비스	- 의사표현의 자유권 - 서비스 종결의 자기결정권 - 부당한 사유로 서비스를 종결 당하지 않을 권리 -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권 -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노인 학대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2. 학대 행위자의 정의

- 학대 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학대 행위자로 판정된 자

3. 노인 학대의 유형

1) 노인학대 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

①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②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

③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2) 노인학대의 대표적 행위

가. 신체적 학대

1)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 노인을 발로 찬다.
- 노인을 주먹으로 폭행한다.
- 노인의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등을 가한다.
- 노인의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 노인의 목을 조른다.
- 노인을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 노인의 몸을 발로 밟는다.
- 노인을 질질 끌고 다닌다.
-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 노인을 활꺾거나 꼬집는다.
- 노인을 입으로 물어뜯는다.
-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2)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을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 한다.
-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낸다.
- 노인을 집 밖으로 쫓아낸다.
- 노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3)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예: 끈으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를 설치한다.

4)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 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 시킨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노인을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 노인이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노인에게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 또는 조건에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나. 정서적 학대

1) 노인과 접촉을 기피한다.

- 노인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노인의 일상생활(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2)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죽이겠다' 고 협박한다.
-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협박을 한다.
- 노인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 노인에게 고향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노인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노인에게 창피를 준다.
- 노인을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노인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3)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 한다.

-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비방이나 폭력적 행동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 노인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4)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킨다.
-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다. 성적 학대

1)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 한다.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노출시켜 놓는다.



라. 경제적 학대

1)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 공적 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2)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 도용).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3)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 노인이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 노인의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마. 방임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노인 스스로 청결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공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2)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 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세금 및 각종 요금납부)를 방치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 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3)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한다.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4)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 받는다. (자기방임)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 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바. 유기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4. 노인 학대의 처벌 기준 (시행일 2017.06.03)

-노인학대 법적 처벌기준:노인복지법,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가능

노인학대 행위	처벌 내용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협박,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5. 노인 학대의 예방

1)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2) 노인 학대 신고자의 비밀 보장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시행일 2016. 12. 30.)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
(‘16.1.25.시행)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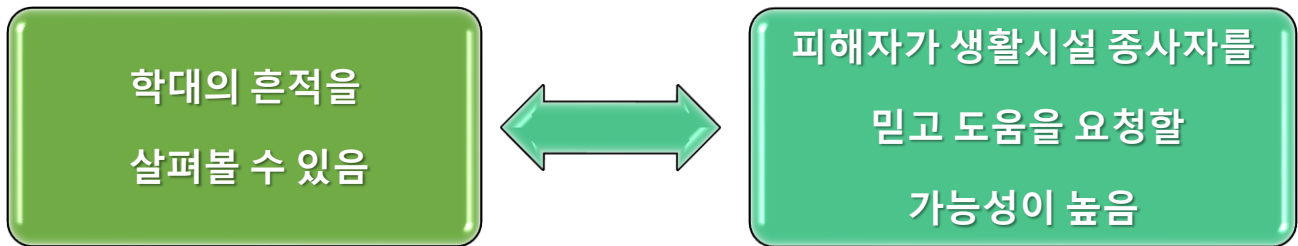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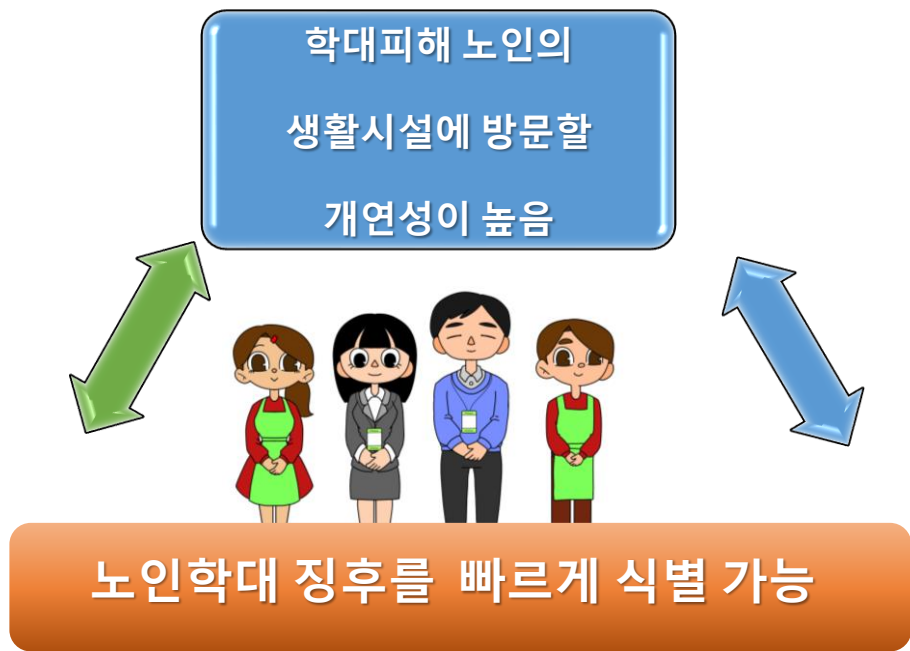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노인복지법이 포함되었으며,
따라서 공익신고자의 범위가
노인학대신고의무자로 확대



동법 제39조의12 법에 명시
(비밀누설의금지)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왜 노인학대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때 즉시 신고 하도록 의무화 됨

노인학대를 알게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1389 또는 129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등

6.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신고의무자가 해야 할 일

- 1) 노인 복지 시설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 운영규정에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함
- 2)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함
- 3) 학대 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이용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함
- 4)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5)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함
- 6)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헐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함
- 7)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됨
- 8) 재가복지시설의 경우,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함
- 9)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

7.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르신이 할 일

- 1) 어떤 경우라도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
- 2)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한다.
- 4) 노인 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 5)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인 관계에 더 관심을 갖는다.
- 6)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한다.
- 7) 지금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한다.
- 8)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는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9) 자녀와의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족의 화목에 최선을 다한다.
- 10) 학대 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기보다는 도움을 청한다.

8. 노인학대의 사례와 대응 방법

1) 인권 사례- 식사

A 어르신은 치아가 부실하고 소화 능력도 떨어져 천천히 혼자 식사하는 것이 좋는데 건강할 때 자주 활동하는 것이 좋다고 되도록 다른 노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라는 권유를 받아 거실의 식탁에 나와 함께 식사를 한다. 그런데 B어르신은 항상 밥을 다른 사람들 보다 빨리 먹고 직원들을 도와준다며 빈 그릇을 치우고 식탁까지 닦는다.

다른 노인들과 직원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식사를 하는 도중에 자꾸 그릇을 치우면 불안해서 식사를 할 수가 없다.

더구나 천천히 밥을 먹고 있으면 계속 옆에 와서 빈 그릇을 치워야 하니 빨리 먹으라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여 기분이 상한다.



대응방법

- ① 충분한 식사 시간을 확보하고 다른 사람들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② 지속적으로 다른 노인의 간섭으로 식사나 개인적 활동에 필요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개인적인 공간을 배려하여 천천히 식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2) 인권 사례- 언어적 무시

A직원은 치매 어르신이라는 이유로 “어르신”이라는 호칭 대신 “OOO ”이라고 어르신의 이름을 부르는 행동을 했다. 또는 “ OOO하셨어요?”와 같이 존대어를 사용하지 않고, “OO 했어?”라고 아이 다루듯 이야기 한다.



대응방법

- ①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이름만 부른다든가, 치매 환자 등 인지 수준이 낮은 노인을 마치 어린 아이 대하듯 해서는 안 된다.
- ③ 노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비하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언어 표현을 고치도록 격려해야 한다. 어르신들과의 친분이 있다고 하여도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학대

3) 인권 사례- 목욕, 기저귀 갈기

A요양보호사는 목욕서비스나 기저귀 care 서비스 제공 시에 어르신을 한 줄로 세워 놓고 care를 제공하였다.

봉사자로 온 B학생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왜 이렇게 하는 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야 빨리 끝나지, 기저귀 착용한 어르신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어.”라고 대답하였다.



대응방법

- ① 목욕 중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중요 부분은 수건으로 가리는 등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② 일괄되게 어르신을 줄을 세워 놓고 care 하는 것은 피하고, 한 분 한 분 가려진 장소로 모셔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로써 어르신의 거부반응이 줄 수 있고, 불안감을 낮출 수 있다.

4) 인권 사례- 치매 어르신의 배회 및 욕설

A어르신은 수건을 허리에 동어 매고 발 일을 나간다면 이곳 저곳을 배회하고 다니신다.

요양보호사가 허리에 맨 수건을 풀어드리려 했더니, “X년아! 우리 애기 업고 다니는 포대기는 왜 뺏고 난리야?”라고 욕을 하며 흥분하셔서 당황한 적이 있다.



대응방법

- ① 종사자는 치매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치매가 뇌 질환임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 ② 판단력이 저하된 노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위험 요인이 제거된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 산책을 통해 욕구해소를 돕는다.
- ③ 치매 노인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바꾸려 하기 보다 시설 환경을 적합하게 만들고 각 노인에게 대해 개별화된 접근을 통해 노인의 욕구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④ 노인이 흥분한 상태라면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 안전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돕는다.